

의안번호	2210617
의 퇴 인	이정헌 의원
회 답 일	2025.07.21.
추계번호	25C301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3조의2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등)	(제1항)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활용 능력을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교육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과정에 필요한 경비, 연구 개발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학생들의 인공지능 활용을 포함한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과 등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3조의2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이하 “교육대학 등”)이 ①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②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교육과정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과정 설치·운영 및 관련 교과목 신설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전문교원 양성을 위한 교과 과정, 교과목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예측이 어려워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43조의2제1항 및 제2항) 교육대학 등이 인공지능 전문교원 양성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과정의 설치·운영비용, 지원 여부 및 예산 규모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산출이 곤란함
- (안 제43조의2제3항) 개정안은 교육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교과의 선정 기준, 개설될 교과목의 수 및 단가 등 추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부족하여 추가재정소요 산출에 한계가 있음
 - 개정안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 및 종합교원양성대학은 국립 26개, 사립 30개로 총 56개임
 - 교육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인공지능 관련 교과가 포함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여부 및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고, 제반 비용 산출 역시 곤란함
 - 참고로, 「교원자격검정령」 및 그 시행규칙,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¹⁾ 등은 인공지능 교육을 포함한 디지털 교육을 1~2학점 이상 이수하여야 교원자격증 무시험취득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²⁾
 - * [참고자료 1] '25년 교육대학 등 현황
 - * [참고자료 2]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조문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1) 2023.3.29. 개정 고시됨

2) 교원자격증 취득 방법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시험검정은 1980년 이후 실시된 바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25년 교육대학 등 현황

구분	양성과정	설립유형	대학명
1	교육대학	국립	경인교육대학교
2	교육대학	국립	공주교육대학교
3	교육대학	국립	광주교육대학교
4	교육대학	국립	대구교육대학교
5	교육대학	국립	부산교육대학교
6	교육대학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7	교육대학	국립	전주교육대학교
8	교육대학	국립	진주교육대학교
9	교육대학	국립	청주교육대학교
10	교육대학	국립	춘천교육대학교
11	사범대학	사립	가톨릭관동대학교
12	사범대학	사립	강남대학교
13	사범대학	국립	강원대학교
14	사범대학	사립	건국대학교
15	사범대학	사립	경남대학교
16	사범대학	국립	경북대학교
17	사범대학	국립	경상국립대학교
18	사범대학	사립	계명대학교
19	사범대학	사립	고려대학교
20	사범대학	국립	국립경국대학교
21	사범대학	국립	국립공주대학교
22	사범대학	국립	국립목포대학교
23	사범대학	국립	국립순천대학교
24	사범대학	사립	단국대학교
25	사범대학	사립	대구가톨릭대학교
26	사범대학	사립	대구대학교
27	사범대학	사립	동국대학교
28	사범대학	사립	목원대학교
29	사범대학	국립	부산대학교
30	사범대학	사립	상명대학교
31	사범대학	국립	서울대학교

구분	양성과정	설립유형	대학명
32	사범대학	사립	서원대학교
33	사범대학	사립	성결대학교
34	사범대학	사립	성균관대학교
35	사범대학	사립	성신여자대학교
36	사범대학	사립	신라대학교
37	사범대학	사립	영남대학교
38	사범대학	사립	우석대학교
39	사범대학	사립	원광대학교
40	사범대학	사립	이화여자대학교
41	사범대학	국립	인천대학교
42	사범대학	사립	인하대학교
43	사범대학	국립	전남대학교
44	사범대학	국립	전북대학교
45	사범대학	사립	전주대학교
46	사범대학	국립	제주대학교
47	사범대학	사립	조선대학교
48	사범대학	사립	중앙대학교
49	사범대학	사립	청주대학교
50	사범대학	국립	충남대학교
51	사범대학	국립	충북대학교
52	사범대학	사립	한국외국어대학교
53	사범대학	사립	한남대학교
54	사범대학	사립	한양대학교
55	사범대학	사립	홍익대학교
56	종합교원양성대학	국립	한국교원대학교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교원자격검정령」 등 관련 조문

[참고표 1]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무시험검정의 대상) 무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3. 「유아교육법」 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의한 교사의 자격검정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의 대상이 아닌 자의 자격검정

제19조(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 ① 제18조제1호 및 제3호의 무시험검정은 「유아교육법」 별표 1·별표 2 또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라 수시로 서류심사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8조제3호의 무시험검정에 합격하려면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2.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3.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4.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학교급식시설에서 3년 이상 학교급식을 전담한 교직원 중에서 영양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유아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준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검정을 받은 사람
6. 교사양성특별과정을 이수한 사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표 2] 「교원자격검정령」 [별표 1]

구분	이수학점
가. 교육대학 또는 사범대학을 졸업한 사람	1) 전공과목: 50학점 이상 2) 교직과목: 22학점 이상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표 3]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① 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 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표 4]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별표 3]

자격종별	교직과목
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학교 정교사(2급), 중등학교 정교사(2급), 특수학교 정교사(2급), 보건교사(2급), 영양교사(2급), 사서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 18학점 이상(<u>교직소양 6학점 이상 포함</u>) - 교육실습 : 4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상 포함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표 5]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6조(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 ①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사자격종별 교직과목 세부 이수기준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표 6]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별표 2]

교직소양	○ 6학점 이상 - 특수교육학 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 교직실무(1~2학점 이상) -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